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1월 3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22일

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·정리하고,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와 반복되는 어휘의 조문 간결화(안 제2조)
-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 등으로 보아 감면혜택 부여(안 제2조, 제3조)
-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-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33조 신설)

라. 참고사항

-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(목적)
-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(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)
- 경상북도 재정과-12662(2004.11. 6)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행정자치부(경상북도)의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.
- 또한,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